

회 의 록

회 의 명	2023년 제2차 산재 재활보조기구 운영위원회 회의
회 의 안 건	1) 신속대응반 제도 운영 및 상황별 사례 소개 (직무지원연구팀) 2)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선안-넓적다리의지 (의지보조기실) 3) 소속병원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설수가-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재활보조기구 수정 (정책사업팀)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13:00 ~ 16:00
회의 장소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3층 회의실
참 석 자	- (공단본부) 재활계획부 장은경 과장, 산재요양부 김병국 팀장, 병원운영부 유지환 팀장, 정책사업팀 김보원 팀장, 전진희 대리 - (재활공학연구소) 직무지원연구팀 송점식 팀장, 김종권 책임연구원, 의지보조기실 신무현 제작실장, 양철호 제작기사, 첨단인지연구팀 박세훈 팀장, 최종문 책임연구원 - (근로복지연구원) 연구1부 이승욱 부장, 이은혜 연구원 - (재활의학연구센터) 이강표 센터장, 김유리 연구간호사
회의 내용	1. 신속대응반 운영 및 상황별 사례 소개 (직무지원연구팀) - (재활의학연구센터)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 개발·지원을 포함하여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 수가 구조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보조기구 수가 관리 측면에서 처방·제작·청구에 대한 지급 기준 및 세부 지급절차 마련과 사전 승인 또는 검토 이후 승인(사후심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산재요양부) 재활보조기구 지원 프로세스 개선 관련, 건강보험의 보조기기별 지원·제작·청구·환급 과정은 산재보험과 차이가 있음. 건강보험에서의 부정수급 대안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선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이종요양비 청구)로 심사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구입·후지급에 관한 민원 발생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재해자 청구 금액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이를 최소화하여 산재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사전승인 프로세스 추진 시 실무적 관점에서의 한계를 논할 필요가 있음. - (재활의학연구센터) 사전승인 프로세스는 신속대응반 운영 및 고가의 보조기구 지원 등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도임. 전문가 자문 및 분기별 회의체 구성은 심사 절차에서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될 것임. 또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초기 고가 재활보조기구 지급이 요구되는 환자, 일상생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환자를 시작으로 적용대상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 필요함. - (재활의학연구센터) 신속대응반 활동 사례를 크게 ①재활공학연구소에서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를 개발한 경우, ②외산 제품을 도입하여 시착(적용) 후 개발한 경우, ③외산 부품을 국산 제품화하여 개발한 경우 세 파트로 구분하여 실제

청구되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 부품의 도입이력·비용내역 정리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향후 수가화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또한 공학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간당 수가를 산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직접인력, 소요되는 시간 등 산정에 구체적인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직무지원연구팀) 수가화 작업은 신속대응반 운영에서의 예산·인력 문제 해결 및 맞춤형 보조기구가 요구되는 환자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해당 적용절차를 사례를 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종요양비 청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 (재활계획부) 신속대응반 운영 사례는 현 개발요양급여제도 내에서 비급여 청구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으로 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요양급여의 심의·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침 개정 전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사업 운영으로만 지원이 가능함.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시 개별요양급여로 적용 절차는 보험재료로 대체 품목이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이 사용되는 산재 화상 환자 이외에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음.
- (재활의학연구센터) 신속대응반 활동 사례 1~2건 선정 후 개발요양급여 청구 절차를 실제 적용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산재요양부/연구1부) 개별요양급여 제도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의 모색 및 유관부서(산재요양부, 병원운영부, 재활의학연구센터 등) 간 업무협약이 필요할 것임.
- (재활의학연구센터/직무지원연구팀) 신속대응반 운영 관련 인천병원, 재활공학연구소 간 환자 선정·진료·제작·검수·지급 등의 절차를 정립해 가는 중이며, 외부적인 요인(산재보험 청구, 장애인 면허 발급 등)으로 제한이 있는 운전재활 관련 보조기구 사례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임.

2.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선안-넓적다리 의지 (의지보조기실)

- (재활의학연구센터/의지보조기실) 현 요양급여 지급원칙 적용만으로는 진료현장에서의 처방 및 산재 심사결정 과정에 한계가 있어왔음. 연도별 요양급여, 이종요양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인천병원에서의 실제 이종요양비 청구 사례(인공지능형 슬관절 의지가 포함된 대퇴의지 일정금액 청구 사례)를 제시함.
- (첨단의지연구팀) 작동원리에 따른 의지 무릎 분류에서 공압식의 확장 개념인 인공지능식과 공압식 관점을 보완한 유압식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전자제어식 의지 간 비용 차이가 있으며, 개발 의지·의수의 상용화 과정에서 가격결정은 주요 논의사항임.
- (재활의학연구센터/첨단의지연구팀) 의료수가 결정에 있어 부품가격 외에 고려할 요소들이 많음. 또한 앞서 제시한 인공지능형 슬관절 의지의 경우, 최초 수가 편입시 특정했던 부품과는 다른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산정된 사례들이 많은 등 현재 재활보조기구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 부품별 시장가격 조사 후 수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접근·논의가 필요함. 인공지능식 및 전자제어식 재활보조기구의 부품단위별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세부 분류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부품단위별 구분과 제품의 시험인

증 등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함. 의료수가로서 제도 운영에 있어 기존 수가와 조화, 현장에서의 활용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를 통해 같이 논의해나가야 함.

☞ 예; 소속병원 요양급여 산정기준 수정(세부안) 4. 재활보조기구

직업·사회복귀지원 재활보조기구 분류항목 中 나. 다리의지 부품변경/개인화
①기본(공압식/유압식), ②인공지능, ③고기능(공압식/유압식), ④전자제어식
4단계로 분류

- (첨단의지연구팀)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공압식/유압식/전자제어식 분류 체계에서 고기능/일반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 가능함. 우선 세부분류 대비 일반적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대분류 결정에 유관부서 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직무지원연구팀) 전자제어식 구조를 기존 요양급여 지급원칙에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 공압식/유압식 작동원리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그간 관련 분류 작업은 진행되어 왔으나, 금액 부분이 지급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관련 용어 정비 후 내년도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 (재활의학연구센터) '23년도 1차 회의를 통해 소속병원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 산정기준(안) 검토·논의 후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총칙으로 규정하고 분류항목별 금액, 내구연한 등의 정의 내용은 부칙으로 하여 소속병원 요양급여에 우선 적용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요양급여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재활의학연구센터) 앞서 제시한 인천병원 이종요양비 청구 사례는 많아질 전망이며, 실무자들 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품별 가이드 제시가 필요함.
- (산재요양부) 이종요양비 청구가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시될 경우 산정된 수가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재활의학연구센터) 현 수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항목으로 청구하여도 실구입비와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추가 인정금액을 제시하거나 고도화된 제품의 인정범위 설정 등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완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직무지원연구팀/재활계획부/연구1부) 이종요양비 청구 사례의 경우 실 소요금액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산정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재활의학연구센터) 세부부품자료를 확보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이종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행정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수가관리체계를 묶음수가에서 부품별로 관리할 경우 그 방향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소속병원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 산정기준(안) 검토 (재활의학연구센터)

- '23년도 1차 회의에서 논의·수정된 소속병원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 산정기준(안) 추가 검토

	기존 세부안	논의 후 수정안(2차)
	A.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 재활보조기구는 신체부위의 망실 또는 기능저하에 대해 대체 또는 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신체 외부에 적용하는 물건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능 발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 대상자의 유형별로 이동,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지급한다. - 초기지급 및 다른 형태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훈련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 B. 재활보조기구의 종류, 직장·사회복귀지원 재활보조기구, 처방·제작계획/승인·검수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이동보조기구, 욕창예방도구, 이송보조기구, 배뇨배변관리도구, 일상생활보조도구, 안과·이비인후과관련 보조기구 등으로 구분하고,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외에 추가지급 혹은 부품교체 가능한 사회·직장복귀지원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함께 관리한다. - 재활보조기구는 물품의 종류별로 1) 해당 진료과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 2) 의지보조기기사, 보조공학사, 휠체어 서비스전문가, 치료사 등 보조기구 전문가들이 제작과 물품 제공을 담당한다. 3) 보조기구 전문가는 실제 지급한 세부 부품, 가격, 날짜, 장소, 함께 제공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 지급기록을 첨부하여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을 요청한다. 4) 사전 제작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후 보조기구 전문가는 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 제작, 물품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A.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 재활보조기구는 신체부위의 망실 또는 기능저하에 대해 대체 또는 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신체 외부에 적용하는 물건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능 발휘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 대상자의 유형별로 이동,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지급한다. - 최초지급 및 다른 형태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훈련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 B. 재활보조기구의 종류, 직업·사회복귀지원 재활보조기구, 처방·제작계획/승인·검수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이동보조기구, 욕창예방도구, 이송보조기구, 배뇨배변관리도구, 일상생활보조도구, 안과·이비인후과관련 보조기구 등으로 구분하고,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외에 추가지급 혹은 부품교체 가능한 사회·직업복귀지원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함께 관리한다. - 재활보조기구는 물품의 종류별로 1) 해당 진료과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 2) 의지보조기기사, 보조공학사, 휠체어 서비스전문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보조기구 전문가들이 제작과 물품 제공을 담당한다. 3) 보조기구 전문가는 실제 지급한 세부 부품, 가격, 날짜, 장소, 함께 제공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 지급기록을 첨부하여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을 요청한다. 4) 사전 제작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후 보조기구 전문가는 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 제작, 물품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논의(1차): 용어 정리(직장·사회복지지원→직업·사회복지지원, 부품변경→부품교체)

C. 재활보조기구 제작지원 서비스, 훈련 및 평가

- 집중재활치료 혹은 복지지원프로그램 중 훈련을 위해 필요한 보조도구는 제작실에 구비된 물품들을 활용하여 대어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며 소요된 재료와 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 재활훈련기간 중 제작기사가 제공한 교육상담은 30분 단위로 일 최대 2시간으로, 보조기구 수정은 보조기구의 종류, 소요장비/재료 및 소요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구성한다.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에게도 기능상태의 변화 혹은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재활보조기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의지와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일상생활보조도구의 경우 각각 개발된 보조기구 집중훈련 및 평가를 활용하고, 기타 보조기구들의 경우 임상적 필요에 따라 제작기사, 치료사, 간호사 등의 교육상담으로 보완하거나, 이동훈련, 보행훈련, 작업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 훈련시간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훈련을 제공한다.

C. 재활보조기구 제작지원 서비스, 훈련 및 평가

- 집중재활치료 혹은 복지지원프로그램 중 훈련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는 제작실에 구비된 물품들을 활용하여 대어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며 소요된 재료와 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 재활훈련기간 중 제작기사가 제공한 교육상담은 30분 단위로 일 최대 2시간으로, 보조기구 수정은 보조기구의 종류, 소요장비/재료 및 소요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구성한다.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에게도 기능상태의 변화 혹은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재활보조기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의지와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일상생활보조도구의 경우 각각 개발된 보조기구 집중훈련 및 평가를 활용하고, 기타 보조기구들의 경우 임상적 필요에 따라 제작기사, 치료사, 간호사 등의 교육상담으로 보완하거나, 이동훈련, 보행훈련, 작업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 훈련시간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훈련을 제공한다.

추가논의(1차):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으로, 추후 현실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함.

D. 수리 및 재지급

- 기존 지급 받은 보조기구가 일부 훼손 및 마모되어 원래의 기능 발휘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료를 지급한다. 사용자의 편의 및 해당 보조기구의 다음 재지급 관리를 위해 보조기구 제작자 혹은 취급업자는 세부 수리내역, 수리목적, 가격 등을 기록하여 담당의에게 전달해야 하며, 해당 자료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리료를 지급한다.
- 재활보조기구는 최초 지급시 요양 중 재활치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 종결 후에는 보조기구의

D. 수리 및 재지급

- 기존 지급 받은 보조기구가 일부 훼손 및 마모되어 원래의 기능 발휘가 **어려울 경우 해당 보조기구를 수리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 및 해당 보조기구의 다음 재지급 관리를 위해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자 등은** 세부 수리내역, 수리목적, 가격 등을 기록하여 담당의에게 전달해야 하며, 해당 자료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재활보조기구는 최초 지급시 요양 중 재활치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구연한에 따라 재지급한다.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조기구 사용력, 훼손 및 마모 정도를 고려하여 수리료가 재지급 금액의 60%이상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요양 종결 후에는 보조기구의 내구연한에 따라 재지급한다.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조기구 사용력, 훼손, 마모 정도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리료 대신 추가 지급이 제공될 수 있다.						
	추가논의(1차): 내구연한 내 재지급에 대한 금액기준 (60%)는 내부적 기준으로 고려하고 추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E. 물품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는 국내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등록된 품목 및 부품으로 구성된 것을 지급해야 한다. - 국내 의료기기 기준이 없는 품목 및 부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제품 인증을 받은 후 산재 보조기구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가능 물품 허가를 득해야 한다.	E. 물품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는 국내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등록된 품목 및 부품으로 구성된 것을 지급해야 한다. - 국내 의료기기 기준이 없는 품목 및 부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제품 인증을 받은 후 산재 보조기구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가능 물품 허가를 득해야 한다.						
	추가논의(1차): 국내 의료기기 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한 제품인증에 대하여는 당장 현실화하기엔 행정적 어려움이 다소 있음. 소속병원 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품목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에서 제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 해당 자료로 국내 인증을 갈음하는 방향도 고려 필요함. 추가논의(2차): 위원회 또는 회의체계 구성 등 자체적인 등록절차를 수립하여 ‘인증’ 및 ‘산재 보조기구 운영위원회’의 용어 재정비가 필요함. 소속병원 요양급여 기준이나, 공단 내 위원회 구성으로 인증과정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함.							
4. 소속병원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설수가 (정책사업팀) - (재활계획부/연구1부) 직업과 직장, 재활보조기구와 재활보조도구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함. 앞서 직장의 용어를 직업으로 수정하였으나, 직장복귀의 용어는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를 구분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를 의미하므로 현 용어(직장복귀)를 유지함.								
부서별 후속 업무	※ 부서별 후속 업무							
	<table><tr><th colspan="2">부서별 후속 업무</th></tr><tr><td>재활공학연구소 직무지원연구팀</td><td>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분류, 가격조사 및 근거자료 마련 </td></tr><tr><td>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실</td><td>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관련 요양급여, 소속병원 요양급여 활용 사례 소개 (최근 아급성기 대퇴절단환자 운영상 도출된 문제 중심) </td></tr></table>		부서별 후속 업무		재활공학연구소 직무지원연구팀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분류, 가격조사 및 근거자료 마련	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실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관련 요양급여, 소속병원 요양급여 활용 사례 소개 (최근 아급성기 대퇴절단환자 운영상 도출된 문제 중심)
	부서별 후속 업무							
재활공학연구소 직무지원연구팀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분류, 가격조사 및 근거자료 마련							
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실	- 넓적다리의지 슬관절 부품 관련 요양급여, 소속병원 요양급여 활용 사례 소개 (최근 아급성기 대퇴절단환자 운영상 도출된 문제 중심)							

	병원운영부	- 소속병원 요양급여 제작기사 서비스 관련 인력·기관 기준 검토 및 재활계획부와 업무협조		
	정책사업팀	- 소속병원 요양급여 보조기구 관련 회의 내용 반영 최신판		
	재활계획부	- 정책사업팀 통해 전달한 소속병원 요양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검토 및 보완 내용		
	재활의학연구센터	- 소속병원 요양급여 보조기구 총칙 및 부칙 관련 의견 정리 - 이종요양비 기록 관련 교육자료 개발 - 소속병원 내 보조기구 심사 자문 위원 섭외		
소요 예산	25,200원 - 산출근거: 회의비 25,200원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첨 부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작성자	김유리 (인)	작성일자	2023년 4월 24일	
검토자	이강표 (인)	검토일자	2023년 4월 26일	